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26.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음.
[추후 책자로 해당 기관에 배포 예정]

목차

Ⅰ 총 칙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및 준수 ····· 1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 ····· 4
3. 대학입학전형정보 제공 ····· 9
4.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 9

Ⅱ 전형별 기본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 10
   가. 전형원칙 ····· 10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0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 11
   가. 전형원칙 ····· 11
   나. 특별전형의 구분 및 운영 ····· 11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2
   라. 특별전형의 종류 ····· 14

Ⅲ 전형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 ····· 30
2. 대학수학능력시험 ····· 31
3. 대학별고사 ····· 32
4. 기타 ····· 32

Ⅳ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 대학별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33
2.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34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 34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 35
다. 추가모집 입학전형 ····· 36
라. 전형기간 자율화 ····· 37
마. 대학입학전형 지원/등록 방법 위반자 처리 ····· 38
3.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 39
가. 모집시기 구분 ····· 39
나. 대학입학지원방법 ····· 39
다. 복수지원 금지사항 ····· 41
라. 합격자 발표 ····· 42
마. 등록 ····· 43
바. 미등록 충원 ····· 44
사. 등록금 환불 ····· 44
아. 전형료 ····· 45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 46

[별첨1] 2028학년도 대비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일정 ····· 47
[별첨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26년 8월 기준) ····· 48
[부록1]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기재사항 ····· 49
[부록2]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50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Ⅰ. 총칙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및 준수

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대교협 정관 제5장의3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수립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교협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함
-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함(학·석사 통합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포함)
- 대학은 각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전형내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 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각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립 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함

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3제21조의4)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교협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수시·정시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전형일정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은 '미제출 대학'으로 공지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별도의 협의·조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함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

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여야 함
- 대입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함
  - 학생부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형 자료(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를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나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수시는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전형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종합) 교과, 비교과
논술위주	• 논술 등
실기/실적위주**	• 실기 등
수능위주	• 수능 등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실기/실적위주 전형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모집 규모 축소 및 학생부 반영 평가를 권장함

- 전형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전형방법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의미함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산정함
    -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평가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산정에서 제외
    -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협약된 군사학과'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산정에서 제외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만학도(30세 이상) 특별전형에 한함
    -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의 인·적성 평가,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
  - 전형방법은 전형의 취지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구분을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함

  ※ 예: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등
- 동일 전형방법 내에서 우선 선발 방식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 전형 운영 시 출신고교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 등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학생의 과목수강 노력(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권장
- 대학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고등교육법」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포함한다)의 친인척 등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3항과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회피·배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등을 포함하여 모집요강 공표 시 안내하여야 함(단,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예외)

◎ 전형요소에서 실기, 면접, 논술,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 미응시자는 부적격 처리를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고등교육법」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

- 대학은 학칙으로 법령에 따른 입학취소의 사유 및 이에 해당할 경우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함
- 전형과정 및 입학 후에도 전형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대학입시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국가기록원, 2024)'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부록2] 참조)

◎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야 함(실기고사 연합관리, 평가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실기고사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위원의 서약서 제출 등 권장)
- 세부 모집단위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로 선발할 경우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여야 함
- 예체능 실기고사 시 모집단위별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 단순 기록 측정 방식의 모집단위의 경우 기록 측정 담당자를 평가위원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 추천 및 무작위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권장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음

※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원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기준으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하여야 함

◎ 대학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2027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함. 다만,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대학(대학간 통합으로 인한 설립 대학 포함)은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함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모집의 해당 모집 '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계별 선발비율,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교과와 반영방법, 수능 가(감)산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등을 포함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정원 내 전형의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정원 외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미지정' 할 수 있음
  - 단, 법령에 따라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등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함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
  - 2028년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8년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함

시한	4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주관	대학	대교협
내용	-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학칙 개정)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제출(ASSIST 활용) *대교협 요청 시 추가자료 제출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대학에 통보

마 기타

- 대학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자료(예: SAT, 공인어학성적 등)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또는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화 관련 전형'이란, 국제화와 관련한 전형요소 또는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함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UP)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입학 후 학점인정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전산시스템 관리기관으로부터 원서접수기간 내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미제출서류의 사후제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대학입학전형정보 제공

- 대교협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전형일정 등)을 취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대교협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대교협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전형유형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모집단위(계열)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대학별고사 평가기준 등 학생의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4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가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 대학은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표준공통원서를 사용하여야 함

나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체점검 및 대교협의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관계기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이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함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Ⅱ. 전형별 기본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연령, 졸업 연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학칙의 모집단위를 동일하게 설정함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함
-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나 특별전형의 구분 및 운영

- 정원 내 특별전형
  -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함
  -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형 취지에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
    -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기준, 전형대상 및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함
- 정원 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은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요소 또는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함

◎ 특별전형의 분류

구분	전형 종류	기회균형 특별전형 해당여부	운영가능여부	
			정원 내 전형	정원 외 전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 장애인 등 대상자	○	○	○
	• 농어촌학생	○		○
	• 특성화고교졸업자	○		○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 국가보훈대상자	○		
	• 서해 5도 학생	○		○
	• 자립지원 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제외)
	• 만학도	○		○ (비수도권 대학 해당)
	• 재외국민과 외국인			○
	• 지역균형			
	• 지역인재			
	• 지역의사선발			
	• 산업대학 우선선발			
	•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예시)	• 검정고시 출신자			
	• 다문화가족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 대안학교 출신자			
	• 종교 관련 ⋮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은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 정원 내 특별전형: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

◎ 정원 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각 호수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함

【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

<table>
<tr><th rowspan="2">호수</th><th rowspan="2">대 상 자</th><th colspan="6">총학생수 기준</th></tr>
<tr><th colspan="3">연도별 입학정원 대비</th><th colspan="2">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th><th></th></tr>
<tr><td>1</td><td>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td><td colspan="3">교육부장관이 결정</td><td colspan="2">교육부장관이 결정</td><td></td></tr>
<tr><td>2</td><td>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7호 대상자 제외)</td><td colspan="3">2%</td><td>10%</td><td>(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td><td></td></tr>
<tr><td>4</td><td>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td><td colspan="3">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 colspan="2">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td></tr>
<tr><td>6</td><td>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td><td colspan="3">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 colspan="2">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td></tr>
<tr><td>7</td><td>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td><td colspan="3">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 colspan="2">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td></tr>
<tr><td>12
의2</td><td>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td><td colspan="3">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 colspan="2">입학정원 제한 없음</td><td></td></tr>
<tr><td rowspan="4">14</td><td>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의 학생</td><td>4%</td><td rowspan="3">5.5%</td><td rowspan="4">11%</td><td>10%</td><td>(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td><td></td></tr>
<tr><td>특성화고교졸업자</td><td>1.5%</td><td>10%</td><td>(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td><td></td></tr>
<tr><td>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td>-</td><td>20%</td><td>(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td><td></td></tr>
<tr><td>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td><td colspan="2">-</td><td>-</td><td>(의대·치대·한의대 5%, 교대·원격대 20%)</td><td></td></tr>
</table>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2024. 2. 20.개정) 중 신입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명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을 따름

※ 첨단학과의 경우,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30호, 2025. 12. 3.)에 따라 '결손인원 활용, 편입학여석 활용'에 의해 증원된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 · 연도별 총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 서해 5도 학생 선발 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입학정원 대비 1%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5% 이내로 선발함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차차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라 특별전형의 종류

1) 기회균형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의 지원자격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설정할 수 있음

호수	대 상 자
1	- 장애인 등 대상자 - 특성화고교졸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	- 국가보훈대상자
3	- 서해 5도 학생
4	- 자립지원 대상자
5	-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6	- 만학도

- '기회균형 특별전형(정원 내·외)' 지원자격을 설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원자격 인정 범위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기술된 지원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5%의 한도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함

가)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지원자격은 아래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유형 모두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다만, 졸업예정자 합격생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Ⅱ]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 입학일과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제출서류 보완 의무화 및 지원자격 검증 내실화

- 아래 제출서류 확인 후 필요 시 추가서류 검토 등 지원자격 검증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은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 농가 인구 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함
  - 행정구역 개편('읍·면' 단위에서 '시' 단위로 개편된 경우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함

다)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특성화고교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제외) 및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졸업생만 해당
-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와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 교육과정 졸업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 아닌 모집단위에서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운영기준

◎ 동일 계열 인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전문 교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해당 교과(군)' 정보를 참고하며, 대학의 장이 모집단위별 학문 특성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인 '교과(군)'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과에서 24학점 이상 이수한 교과(군)을 제시할 수 있음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시한 학과별 교과(군)이 대학이 제시하는 모집단위별 교과(군)과 다르더라도, 학생이 대학의 모집단위별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 교과를 2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함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 계열 운영 방안 모형 】

고교에서 제시한 학과별 해당 교과(군)			대학이 설정한 동일계열 모집단위	
특성화고	학과명	교육과정의 교과(군)	모집단위명	대학
A고	디지털정보처리과	「정보 · 통신」, 「경영 · 금융」	정보통신공학과, 경영금융학과	D대
B고	산업디자인과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건축 · 토목」	공간디자인학과, 건축과	E대
C고	건축과	「건축 · 토목」	건축과, 토목과	F대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 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항목에 포함함

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 · 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운영기준

◎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반 또는 혼합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함. 다만 산업체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개발·운영할 것을 권장함(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 단, 전문교과 교원 양성 학과는 운영 가능)

※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제2023-14호, [별표3] 참조)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운영기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자로 통일하여 모집함

사) 서해 5도 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

법령상 지원자격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아)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법령상 지원자격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별전형

자격기준

법령상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차)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

- 입학 연도(3월 입학: 3월 1일 / 9월 입학: 9월 1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사람
  - 단, 정원 외로 만학도를 선발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함

> 12의2.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2) 지역균형 특별전형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5항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운영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제4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선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5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함

3)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격기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
  ※ 입학일과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치과대학 · 약학대학 · 간호대학 · 한약학과' 지원자는 아래의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학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초 · 중등교육법」제2조제2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초 · 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 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운영기준

-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에 따라 지역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해당 지역	범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대학이 소재하는 해당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해당지역 내 구체적 범위는 대학이 설정

- 해당 지역의 범위는 보다 세분화할 수 없음(시 · 군 · 구 단위로 설정 불가)
- 고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발 안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학생 입학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를 따름

4)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

자격기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2]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중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각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 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

※ 입학일과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운영기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지정한 대학은 반드시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생 선발 시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지역 정주 의지 등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규정하는 학비등의 지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복무의무를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고등학교 소재지별로 선발된 사람의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의 고등학교 소재지별 선발인원 및 선발비율 등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설정하여야 함
  - 해당 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보다 세분화하거나, 고시된 지역별 선발 비율을 임의로 통합할 수 없음
  - 고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
-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 선발 결과 미충원된 결원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차차년도에 한해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 규모는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결원이 발생한 지역과 이월하여 선발하려는 지역이 동일하여야함
  - 이월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선발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학년도 내 모집시기별 결원은 다음 모집시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일한 지역 기준에 한하여 이월 선발할 수 있음

5) 특기자 특별전형

운영기준

- 특기자 특별전형은 특기와 관련된 경기(대회) 참여 경력, 입(수)상실적, 자격(증), 성적 등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함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
  -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단위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함

1. 일반사항

가.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경우,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1)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설정함

(2) 사전 스카우트 등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나. 대학은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전형일정을 지켜 선발하여야 함

2. 자격기준

가.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자격 기준을 권장함

나. 고교졸업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기간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함

다. 종목별 세부적인 지원자격 심사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라.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자격증, 면접·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1)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및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21.2.)에 따라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반영방법 및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교과 성적, 출석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필수, 반영방법은 대학 자율 설정)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초·중·고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도입

(2) 실적평가 시에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모집요강에 상세하게 공개함을 권장함

(3)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동실기를 권장함)

(4) 실기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함. 1인 이상의 타 대학교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 또는 공정성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5) 면접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야 함. 1인 이상의 타 대학교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또한 공정성 위원이 면접평가 시 참관하여야 함

(6) 평가위원 구성 시 복수추천, 무작위 선정 방식 권장

나. 경기 실적의 경우,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
다.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생선수를 선발하도록 권장함
라.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

6)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운영기준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7) 산업체 등 위탁학생 선발

운영기준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8)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모집인원

모집인원	법령 구분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세부 지원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부모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체류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자녀 (학생)	재학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체류조건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국외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대학에서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대학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대학은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하며, 국외발급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것을 권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외교부가 출국권고(여행경보1 3단계) 이상의 경보를 신규로 발령한 지역에서 재학중이던 학생이 불가피하게 국내로 일시·조기 귀국한 경우,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직·재학·체류 자격요건의 예외적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운영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정한 각 모집시기별 전형일정을 지켜 운영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사전예고 원칙을 지켜야 함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 · 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3.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4.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대학이 정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Ⅲ. 전형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작성기준일

- 수시모집: 2028. 08. 31.(목)
- 정시모집: 2028. 11. 30.(목)

◎ 자료제공

- 제공기관: 각 시·도교육청
- 제공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고교 일괄 생성) 2028년 2월 졸업자 ~ 2029년 2월 졸업(예정)자
  (개인별 신청자만 생성) 2005년 2월 졸업자 ~ 2027년 2월 졸업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범위 확대 계획(2023. 03.)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범위 확대
- 고교 일괄 생성: 고교에서 자료를 일괄 검증·생성한 후, 대학에서 해당 학생의 자료를 수신
- 개인별 신청자만 생성: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에 보안 접속 후, 해당 자료를 직접 검증·생성 신청하여 대학에 제공

* 제공 대상, 자료 제공일 등은 정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공시기: (수시모집) 2028. 09. 22.(금) /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2029. 01. 08.(월)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전산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생부위주 전형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며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개설유형 등),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등)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함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
  - 온라인 제공을 희망하는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2028. 11. 16.(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2028. 12. 08.(금)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예정)
  - 제공기간: 2028. 12. 08.(금) ~ 2029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제공방법: 온라인 제공
  - 제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제공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제공자료를 활용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으로만 설정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정시에서 전형요소로 활용할 경우, 예측 및 지원 가능성 확대를 위해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수능 가(감)산점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필수 지정 취지 실현 권고
  -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있어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3 대학별고사

-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
  - 대학별고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가 되지 않도록 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함
  -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되며,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입학전형자료로 교과성적 외의 자료(예: 특기실적 등)를 활용할 수 있음(자기소개서 제외)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Ⅳ.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 대학별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2027년 3월 31일(수)
  - 다만,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 대학(대학간 통합으로 인한 설립 대학 포함)은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수립 및 제출
  - 대학 입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입력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모든 전형을 입력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2027년 4월 30일(금)(「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
  - 다만,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 대학(대학간 통합으로 인한 설립 대학 포함)은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발표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협의·조정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게시할 수 있음

2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을 2028년 5월 31일(수)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수시모집 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2028. 09. 18.(월) ~ 21.(목)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은 아래 일정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 - 2028. 07. 03.(월) ~ 07.(금) 또는 09. 18.(월) ~ 21.(목)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8. 09. 22.(금) ~ 12. 18.(월) (88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의 원서접수를 7월에 실시할 경우 전형기간은 '2028. 07. 08.(토)'부터 시작
합격자 발표	2028. 12. 19.(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8. 12. 20.(수) ~ 22.(금) (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2028. 12. 23.(토) ~ 28.(목) (마감일 18시까지) (6일간) ※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미등록 충원 등록	2028. 12. 29.(금) 18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국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대학은 지원자의 예비 합격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미등록 충원 기간과 방법을 모집요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정시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대학은 정시 모집요강을 2028년 9월 1일(금)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정시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정시모집 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2029. 01. 02.(화) ~ 0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9. 01. 08.(월) ~ 15.(월) (8일)
	나군	2029. 01. 16.(화) ~ 23.(화) (8일)
	다군	2029. 01. 24.(수) ~ 31.(수) (8일)
합격자 발표		2029. 02. 06.(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9. 02. 07.(수) ~ 09.(금) (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2029. 02. 14.(수) ~ 19.(월) (마감일 18시까지) (6일간) ※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미등록 충원 등록		2029. 02. 20.(화) 18시까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정시모집의 전형기간 3개 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 서류 평가는 군별 전형기간 구분 없이 진행 가능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모집단위별로 전형기간 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다 추가모집 입학전형

추가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추가모집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감된 이후의 결원 사항과 추가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2029년 2월 20일(화) 18시까지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일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9년 2월 28일(수)까지 대교협에 상시 제출하여야 함
  - 대교협에 제출하는 사항(전형일정,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과 지원자에게 안내되는 사항(추가모집 안내 홈페이지, 원서접수 홈페이지, 인쇄물 등)이 동일하여야 함

추가모집 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2029. 02. 21.(수) ~ 28.(수) (8일간) ※ 합격통보: 2029. 02. 28.(수) 18시까지 ※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등록마감	2029. 02. 28.(수) 20시까지

- 추가모집에 대한 공지 및 모집인원 발표는 2029년 2월 20일(화) 18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원서접수와 전형은 2029년 2월 21일(수) 9시부터 실시할 수 있음
- 추가모집 전체 기간 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여러 차수로 전형을 실시할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일 모집단위의 원서접수를 차수 간 동시에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음

라 전형기간 자율화

모집시기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모집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함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3월 입학	2028. 07. 03.(월) ~ 2029. 02. 28.(수) (241일간)
	9월 입학	2029. 03. 01.(목) ~ 08. 31.(금) (184일간)

※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및 충원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위 기간 내에 대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차수로 전형을 실시할 경우 원서접수를 차수 간 동시에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음

※ 모집요강은 대학이 정하는 모집기간 이전에 발표함

마 대학입학전형 지원/등록 방법 위반자 처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수행
- 대학은 대교협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 예방」 처리 방식에 따라 지원자 및 등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시, 정시, 추가모집 기간 동안 지원자 및 등록자 현황을 대교협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함
  - 개별 대학의 지원자 및 등록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타 대학과 수험생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학에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자료 제출: 2029년 3월 중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등록자 현황을 제출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 점검: 2029년 4월 중
  -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2029년 5월 중
  -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2029년 5월 중

3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각 모집시기별 실시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함

나 대학입학지원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공통사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에서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함
  -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 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대교협 요청기간에 맞춰 즉시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은 등록자에 대한 고교 졸업 사실 및 최종적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불가함
  - '접수된 원서'란 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를 의미함
- 대학은 원서접수 횟수 및 기한과 관련된 정보를 수험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접수 및 입학이 무효가 됨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창구 접수 시에는 대면으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이 때 '하나의 전형'은 모집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별로 '정원 내/외 구분, 자격기준, 전형요소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유무'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음
  - 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서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 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음(정시모집은 제외)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1개 대학의 다수 전형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함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는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 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음
  - 대입 지원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모집단위는 하나의 군에서만 모집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군으로 분할(가나·가다·나다·가나다)하여 모집할 수 없음

추가모집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표준 대입전형 체계의 위주 구분 원칙을 지켜야 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다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다른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 정시모집 지원 시 모집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군이 같은 모집단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 군의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라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방법

-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함(대학 홈페이지 게시, 전화, 문자 등)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각 모집시기별로 모집요강에 기재된 기간과 인원수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발표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 시작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전화녹취 등)를 확보하여야 함
  - 개별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등)은 모집요강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수험생은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에 안내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는 그 순위와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모집인원 유동제

- 모집시기별 미달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사전에 예고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동일 모집시기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수시모집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 불가
  - 정시모집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 불가
  - 정시모집 내에서 모집 군 간 인원 이월 불가
  - 정원 외 전형에서 법령으로 구분된 서로 다른 지원자격 간 인원 이월 불가
- 대학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하여야 하며,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은 모집요강에 사전 고지함
  - 불가피하게 발생한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인원보다 초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나, 초과 모집한 인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차차년도 모집인원에서 감축함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9-208호)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마 등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은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음

◎ 합격자는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하여야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대학에 등록한 자가 이후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 합격한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때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외국인 입학생 중 비자를 받지 못한 자는 입학 취소하여야 함
- 대학은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바 미등록 충원

- 대학은 미등록 충원과 관련된 주요사항(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 충원일정 및 방법 등)을 모집요강 또는 합격자 조회화면 등을 통해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된 내용대로 미등록 충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최종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일방적 통보(홈페이지 일괄게시, 문자 발송 등) 금지
- 전형별 모집인원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사전에 예고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 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한 예비 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야 함

사 등록금 환불

-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함
- 대학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자를 등록 포기자로 처리하여야 하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아 전형료

- 전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전형료를 판단하되, 전형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형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
  -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 해당 대학 직접 방문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 관계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대입전형 진행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음 연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필요시)
9월 ~ 익년 2월	~ 3월	~ 3월 31일	~ 4월 말
-	특별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특별법 제10조제3항 시행령 제5조제2항	특별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1항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 대입 반영계획 수립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함
  -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함
    ※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원,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야 함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

*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영향평가 대상이 됨

*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별첨1 2028학년도 대비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일정

구 분		2028학년도	2029학년도
학생부 작성 기준일		수시: 2027. 08. 31.(화) 정시: 2027. 11. 30.(화)	수시: 2028. 08. 31.(목) 정시: 2028. 11. 30.(목)
수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2027. 09. 20.(월) ~ 23.(목) 중 3일 이상	2028. 09. 18.(월) ~ 21.(목)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7. 09. 24.(금) ~ 12. 20.(월) (88일)	2028. 09. 22.(금) ~ 12. 18.(월) (88일)
	합격자 발표	2027. 12. 21.(화)까지	2028. 12. 19.(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7. 12. 22.(수) ~ 24.(금) (3일)	2028. 12. 20.(수) ~ 22.(금) (3일)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2027. 12. 26.(일) ~ 30.(목) (마감일 18시까지)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5일간)	2028. 12. 23.(토) ~ 28.(목) (마감일 18시까지)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6일간)
	미등록 충원 등록	2027. 12. 31.(금) 18시까지	2028. 12. 29.(금) 18시까지
정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2028. 01. 03.(월) ~ 06.(목) 중 3일 이상	2029. 01. 02.(화) ~ 0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8. 01. 10.(월) ~ 17.(월) (8일) 나군: 2028. 01. 18.(화) ~ 25.(화) (8일) 다군: 2028. 01. 31.(월) ~ 02. 07.(월) (8일)	가군: 2029. 01. 08.(월) ~ 15.(월) (8일) 나군: 2029. 01. 16.(화) ~ 23.(화) (8일) 다군: 2029. 01. 24.(수) ~ 31.(수) (8일)
	합격자 발표	2028. 02. 10.(목)까지	2029. 02. 06.(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8. 02. 11.(금) ~ 14.(월) (4일)	2029. 02. 07.(수) ~ 09.(금) (3일)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2028. 02. 15.(화) ~ 20.(일) (마감일 18시까지)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6일간)	2029. 02. 14.(수) ~ 19.(월) (마감일 18시까지)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6일간)
	미등록 충원 등록	2028. 02. 21.(월) 18시까지	2029. 02. 20.(화) 18시까지
추가 모집	원서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원서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2028. 02. 22.(화) ~ 29.(화) (8일간) ※합격통보: 2028. 02. 29.(화) 18시까지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원서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2029. 02. 21.(수) ~ 28.(수) (8일간) ※합격통보: 2029. 02. 28.(수) 18시까지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등록마감	2028. 02. 29.(화) 20시까지	2029. 02. 28.(수) 20시까지

※ 수능 시행일: 2028. 11. 16.(목), 수능 성적통지일: 2028. 12. 08.(금)

별첨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26년 8월 기준)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1	강원대	국립	36	강서대	사립	71	대전신학대	사립	106	성균관대	사립	141	인천가톨릭대	사립	176	한일장신대	사립
2	경북대	국립	37	건국대(서울)	사립	72	대진대	사립	107	성신여대	사립	142	인하대	사립	177	협성대	사립
3	경상국립대	국립	38	건국대(글로컬)	사립	73	덕성여대	사립	108	세명대	사립	143	장로회신학대	사립	178	호남대	사립
4	국립경국대	국립	39	건양대	사립	74	동국대(서울)	사립	109	세종대	사립	144	전주대	사립	179	호남신학대	사립
5	국립공주대	국립	40	경기대	사립	75	동국대(WISE)	사립	110	세한대	사립	145	제주국제대	사립	180	호서대	사립
6	국립군산대	국립	41	경남대	사립	76	동덕여대	사립	111	송원대	사립	146	조선대	사립	181	홍익대	사립
7	국립금오공과대	국립	42	경동대	사립	77	동명대	사립	112	수원가톨릭대	사립	147	중부대	사립	182	화성의과학대	사립
8	국립목포대	국립	43	경성대	사립	78	동서대	사립	113	수원대	사립	148	중앙대	사립	산업대		
9	국립목포해양대	국립	44	경운대	사립	79	동신대	사립	114	숙명여대	사립	149	중앙승가대	사립	183	청운대	사립 산업대
10	국립부경대	국립	45	경일대	사립	80	동아대	사립	115	순천향대	사립	150	중원대	사립	184	호원대	사립 산업대
11	국립순천대	국립	46	경희대	사립	81	동양대	사립	116	숭실대	사립	151	차의과학대	사립	교육대		
12	국립창원대	국립	47	계명대	사립	82	동의대	사립	117	신경주대	사립	152	창신대	사립	185	경인교대	교육대
13	국립한국교통대	국립	48	고려대(서울)	사립	83	루터대	사립	118	신라대	사립	153	청주대	사립	186	공주교대	교육대
14	국립한국해양대	국립	49	고려대(세종)	사립	84	명지대	사립	119	신한대	사립	154	초당대	사립	187	광주교대	교육대
15	국립한밭대	국립	50	고신대	사립	85	목원대	사립	120	아신대	사립	155	총신대	사립	188	대구교대	교육대
16	부산대	국립	51	광신대	사립	86	목포가톨릭대	사립	121	아주대	사립	156	추계예술대	사립	189	부산교대	교육대
17	서울과학기술대	국립	52	광운대	사립	87	배재대	사립	122	안양대	사립	157	칼빈대	사립	190	서울교대	교육대
18	서울대	국립대 법인	53	광주가톨릭대	사립	88	백석대	사립	123	연세대(서울)	사립	158	평택대	사립	191	전주교대	교육대
19	서울시립대	공립	54	광주대	사립	89	부산가톨릭대	사립	124	연세대(미래)	사립	159	포항공대	사립	192	진주교대	교육대
20	인천대	국립대 법인	55	광주여대	사립	90	부산외대	사립	125	영남대	사립	160	한국공학대	사립	193	청주교대	교육대
21	전남대	국립	56	국민대	사립	91	부산장신대	사립	126	영남신학대	사립	161	한국기술교대	사립	194	춘천교대	교육대
22	전북대	국립	57	극동대	사립	92	삼육대	사립	127	영산대	사립	162	한국성서대	사립			
23	제주대	국립	58	금강대	사립	93	상명대	사립	128	영산선학대	사립	163	한국외대	사립			
24	충남대	국립	59	김천대	사립	94	상지대	사립	129	예수대	사립	164	한국침례신학대	사립			
25	충북대	국립	60	나사렛대	사립	95	서강대	사립	130	예원예술대	사립	165	한국항공대	사립			
26	한경국립대	국립	61	남부대	사립	96	서경대	사립	131	용인대	사립	166	한남대	사립			
27	한국교원대	국립	62	남서울대	사립	97	서울기독대	사립	132	우석대	사립	167	한동대	사립			
28	한국체육대	국립	63	단국대	사립	98	서울신학대	사립	133	우송대	사립	168	한라대	사립			
29	가야대	사립	64	대구가톨릭대	사립	99	서울여대	사립	134	울산대	사립	169	한림대	사립			
30	가천대	사립	65	대구대	사립	100	서울장신대	사립	135	원광대	사립	170	한서대	사립			
31	가톨릭관동대	사립	66	대구예술대	사립	101	서울한영대	사립	136	위덕대	사립	171	한성대	사립			
32	가톨릭꽃동네대	사립	67	대구한의대	사립	102	서원대	사립	137	유원대	사립	172	한세대	사립			
33	가톨릭대	사립	68	대신대	사립	103	선문대	사립	138	을지대	사립	173	한신대	사립			
34	감리교신학대	사립	69	대전가톨릭대	사립	104	성결대	사립	139	이화여대	사립	174	한양대(서울)	사립			
35	강남대	사립	70	대전대	사립	105	성공회대	사립	140	인제대	사립	175	한양대(ERICA)	사립			

부록1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기재사항

○ 수시모집 지원·전형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여 올바른 입시문화의 정착을 추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①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음
③ 위 ①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④ 본교에서 위 ①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대학별 모집요강의 편제 알림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요강의 편제를 다음과 같이 공통화할 것을 권장함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 사항)
Ⅱ.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Ⅲ. 전형별 모집인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Ⅴ. 세부 전형별 안내
OOOOO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 수능최저학력기준
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5. 전형일정
6. 제출서류
※ 동점자 처리기준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양식포함)
: 별첨 자료로 활용 (대학 선택)
Ⅵ.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정시: 수능 반영방법
학생부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 대학별 유의사항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Ⅸ. 전형료
Ⅹ. 학사안내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부록2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연번	소기능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단위과제 업무설명	기록물 유형
134	입시관리	입시업무	5년	입학업무 일반사항(입시관련 성적 이외 업무)을 이행하는 업무	· 학부 전형료 공공요금 부담금 납부 · 수시모집 회피배제·제척 관련 공정서약 및 회피 자진신고서 · 신입생 농어촌거주 사실 확인 · 대학입시박람회 참가 ·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확정 · 입시홍보관리, 대학입시박람회 참가, 고교방문 및 입시설명회
135	입시관리	입시관리	10년	입학업무 기본계획 및 대학·대학원의 신입생 선발업무 중 수시모집, 정시모집, 편입생 모집, 시간제등록생 등 모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모집시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학부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보고 ·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대상 사정회 실시 · 정시모집 실기고사 시행결과 보고 · 입시홍보계획 수립 · 성적사정대장 · 신/편입생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 신/편입생 원서접수 현황 결과보고 ·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 신/편입생 최종 등록 현황 보고
136	입시관리	입학사정관 운영관리	10년	입학사정관 전형 개발 및 제도 개선, 홍보, 상담업무 등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련된 업무	·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기본계획 · 입학사정관 상담업무 운영 및 결과보고

※ 국가기록원 발간,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4년)」, 2024년 1월 1일 시행